

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~17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6. 4. 12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이장 업무 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대책 보상과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이장의 안정적 업무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이장의 사기진작 조항 신설(안 제6조).
 -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
 - 단체보험 가입
 -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: 연 2회
 - 장기 우수이장 국내외 연수 : 연 2회
 - 체육·수련대회(군단위) : 연 1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▶ 제24차 경남도 시장·군수협의회(12. 2)의 의결사항
- ▶ 도 행정과-14624(2005. 12. 28)호와 관련임.

나. 예산조치 : 추경확보예정

다. 기 타

(1)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(2)입법예고(2006. 2. 17~3. 9)결과 : 1건(표창2회→1회, 연수2회→1회)

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”를 “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사기진작)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

1.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
2. 단체보험 가입
3.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: 연 2회
4. 장기 우수이장 국내외 연수 : 연 2회
5. 체육·수련대회(군단위) : 연 1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6조(사기진작)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안에 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 2. 단체보험 가입 3.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: 연 2회 4. 장기 우수이장 국내외 연수 : 연 2회 5. 체육·수련대회(군단위) : 연 1회